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66호 2023. 9. 6. (수)

고 시

제2023-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2

공 고

- 제2023-10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9
- 제2023-10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제2023-10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9
- 제2023-10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3

공										
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래전략실 (☎309-5411)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00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 업 주 체

가. 성 명 :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정수 (주)신태양건설 대표 안정홍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00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6,708㎡(※실사용 대지면적 : 6,043㎡)

다. 건축면적 : 2,980.8681㎡

라. 연 면 적 : 70,605.6633㎡

마. 규 모 : 지하6층/지상38층, 3개동, 아파트 350세대, 오피스텔 22호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23. 10. 6. ~ 2027. 4. 6.

5.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구포동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구포동 500번지 일원	-	증) 6,708	6,70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구포동 500번지 일원	6,708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자하며, 동법 제19조 1항 5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수립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708	-	6,708	100.0	
일반상업지역	6,708	-	6,708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8	30~54.7	주간선 도로	4,200	구포동 제57호 광장	만덕동 광3-8	일반 도로	-	부고 제543호 (71.09.13)	
변경	대로	2	8	30~54.7	주간선 도로	4,200 (38)	구포동 제57호 광장	만덕동 광3-8	일반 도로	-	부고 제543호 (71.09.13)	일부 구간 확폭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35	구포동 361	구포동 385 (소2-4호)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72.05.30)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35 (9)	구포동 361	구포동 385 (소2-4호)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72.05.30)	가각 변경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540	구포동 196	구포동 1060-51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72.05.30)	
변경	소로	2	4	8~11	국지 도로	540 (135)	구포동 196	구포동 1060-51	일반 도로	-	부고 제158호 (72.05.30)	일부 구간 확폭

주) ()는 구역 내 연장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8	대로 2-8	◦ 일부구간 노선확폭 (B=31m→B=33m)	◦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구간 노선 확폭
소로 1-1	소로 1-1	◦ 가각변경	◦ 소로2-4호선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도로 가각변경
소로 2-4	소로 2-4	◦ 일부구간 노선확폭 (B=8m→B=8~11m)	◦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구간 노선 확폭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35	전기공급 설비 (송전시설)	북구 화명동 809-1 (북부산변전소)	사하구 감전동 441-10 (감천화력발전소)	-	17.561	142	-	

주)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	-	계	6,708			6,708	
-	-	A	6,043	-	구포동 500번지 일원	6,043	
-	-		172	-	-	172	도로용지
-	-		493	-	-	493	도시계획도로

※ 도로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설치 후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새로이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관리청에
무상귀속 됨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비 고
-	A-1	지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800% 이하
		높 이	◦ 38층 이하
		배 치	◦ 일조,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배치 권장 ◦ 복리시설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집중형으로 계획
		형 태 건 축 선	◦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크기, 이동간격, 공간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건축법규에 의함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공공보행통로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치	내 용	비고
-	대로2-8호선~소로2-4호선	° 공공보행통로 신설 (L=81m, B=3m)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00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8호선 외 2개소)
- 3)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8호선 외 2개소)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4) 사업의 규모
 - 대로2-8호선 일부구간(L=38m, B=3m)
 - 소로1-1호선 일부구간(L=32m, B=1.5~3m)
 - 소로2-4호선 일부구간(L=135m, B=10m)
-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정수 (주)신태양건설 대표 안정홍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3년 10월 6일
 -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7년 4월 6일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대로2-8호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197-2	도	9	1	부산광역시 북구					
2	200-3	대	50	30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3	201-2	대	187	23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4	1154-1	도	8,218	3	국토교통부					
계			8,464	57						

□ 소로1-1호선

번 호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지 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383	대	129	7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2	384-3	대	192	12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근저당권	
3	385	대	78	36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4	1154- 1	도	8,218	6	국토교통부					
계			8,617	61						

□ 소로2-4호선

번호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지 분)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내용	
1	197-2	도	9	8	부산광역시 북구					
2	199	대	2	2	기획재정부					
3	200-3	대	50	11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4	385	대	78	10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5	485	도	48	24	부산광역시 북구					
6	486	대	421	65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7	497	대	293	45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8	498	대	71	26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9	500	대	784	46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10	504	대	63	3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11	505	대	28	27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12	506	대	102	45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13	508	대	71	38	구포강변류 지역주택조합 (35 / 51) 부산광역시 북구 (16 / 51)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63, 5층(구포동, 청양빌딩)	주식회사동원제일 저축은행 외 13			근저당권
14	1154-1	도	8,218	25	국토교통부					
계			10,238	375						

6. 관계도면 : 기재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0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2023. 6.7.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해단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 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에게 제출하거나 전화(T.051-309-4135, F.051-309-46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산광역시 복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복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0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모두 포함하여 조례의 목적이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등에 대하여 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추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 나.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명칭 일치(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48 (화명동) (우편번호 : 46528)
- 2) 연락처 : ☎) 051-309-7051, Fax) 051-309-7029,
E-mail) eunzziii@korea.kr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장기 등”을 “기증희망자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장기 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복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구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 등”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기 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그밖에”를 “그 밖”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복구의회 의원

제6조제2호 중 “장기기증등록기관”을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기 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 복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복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장기 등”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 등의”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로,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등록자”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가”를 “부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소”를 “거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하“홍보대사”라 한다.)”를 “(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장기 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장기 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각막·체도·소장을 말한다. 2.“장기 등 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등록기관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4.“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등의 기증신청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기증 신청을 접수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및 구청 민원부 	<p><u>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p> <p>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서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구의원
2. ~ 5. (생략)
6.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
7. (생략)
8.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장기기증등록기관
3. (생략)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구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
2. ~ 5. (현행과 같음)
6. 장기 등 및 인체조직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회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장기이식등록기관
3. (현행과 같음)
4. ----- 장기 등 및 인체조직-----

제7조(위원의 임기) ----- 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복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구청 민원부서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한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 기증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복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②·③ (생략)

되, 두 차례만 ----- . ----- .

제9조(수당 및 여비) ----- 「부산광역시 복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 <단서 삭제>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 장기등 및 인체조직 ----- .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1. (현행과 같음)
2. 부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가 ----- ② ----- 거주----- .

제13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 (이하 “홍보대사”라 한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0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과 일치시키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추가 및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안 제명, 제2조)
- 나. 개정조례안 규정 반영 (안 제1조, 제2조)
- 다.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48 (화명동) (우편번호 : 46528)
 - 2) 연락처 : ☎) 051-309-7051, Fax) 051-309-7029, E-mail) eunzziii@korea.kr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부산광역시 복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복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3.0.0.>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 지원사항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복구 보건소(덕천지소 포함)의 내과(물리치료 포함) 진료비	면 제 (본인부담금에 한함)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부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교양강좌 수강료	50% 할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부산광역시 복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50% 할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u>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u>」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복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p> <p>2.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등록자 본인</p> <p>② 「<u>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u>」 제12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51 1429 730 1883">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h>지원대상</th> </tr> </thead> <tbody> <tr> <td>보건소(덕천지소 포함)의 내과(물리치료 포함) 진료비</td> <td>면제(본인부담금에 한함)</td> <td>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td> </tr> <tr> <td>부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의 예식장 사용료</td> <td></td> <td></td> </tr> <tr> <td>부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교양강좌 수강료</td> <td>50%할인</td> <td>장기 등 기증자</td> </tr> <tr> <td>부산광역시 복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td> <td>50%할인</td> <td>장기 등 기증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보건소(덕천지소 포함)의 내과(물리치료 포함) 진료비	면제(본인부담금에 한함)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	부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의 예식장 사용료			부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교양강좌 수강료	50%할인	장기 등 기증자	부산광역시 복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50%할인	장기 등 기증자	<p><u>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u>」-----</p> <p>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u>부산광역시 복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복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 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p> <p>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조직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p> <p>② <u>조례</u> 제12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보건소(덕천지소 포함)의 내과(물리치료 포함) 진료비	면제(본인부담금에 한함)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														
부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의 예식장 사용료																
부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교양강좌 수강료	50%할인	장기 등 기증자														
부산광역시 복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50%할인	장기 등 기증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0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개정(2023.6.13.,2023. 8. 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

- (반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 (면제) 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나.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 ▷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 경력채용시험 점검 의무화
 - ▷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여부 점검을 위한 임용점검위원회 신설

다.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

- 경력경쟁임용 관련 자격증 지정기준 및 구분표 중 관련분야 경력기간 자율 지정

라.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 녹지직렬 중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산림자원, 산림보호, 조경직류에 나무의사 자격증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행정지원과, 전화 309-4102, 팩스 309-4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 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6의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에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4 가목 녹지 직렬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작성요령 6. 수입증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별표 14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